

커맨 시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 차단에 관한 방침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미납으로 인한 수도차단에 관한 본 방침은 본문에 나온 조항에 의거하여 미납으로 인한 시정부의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중단에 적용한다. 본 방침과 시의 조례안, 방침, 규정과 상충이 일어나는 경우, 본 방침이 우세하다.

I. 방침의 적용; 연락할 전화번호: 본 방침은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서비스에만 해당된다. 본 방침은 기타 시정부 공공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시정부의 기존 방침과 절차는 비주거용 수도서비스 계정에 그대로 적용된다. 수도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한 수도요금 납부와 본 방침에서 규정한 잠정적 대안의 설정에 관한 지원을 문의하려면 (559) 846-9384 으로 시정부에 연락한다. 시정부의 경리부에 요금납부를 적시에 하는 것이 고객의 책임이다.

II.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중단 :

A. 고지서 발급, 마감일, 납부 : 이전 달의 수도서비스에 대한 고지서는 매월 초에 고객에게 발송한다. 납부금을 우편으로 보내는 월의 말일("납부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시청의 경리부인 850 S. Madera Avenue, Kerman, CA 93630 으로 요금을 납부하거나 시정부의 공과금 납부 웹사이트인 <https://cityofkermanutilities.merchanttransact.com> 으로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된다.

1. 계량기는 주기적 고지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검침하고, 또한 시작 고지서, 마감 고지서, 특수 고지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검침하게 된다.

2. 계량기서비스에 대한 고지서에 현재와 과거 계량기 검침기간 동안
발급된 고지서, 유닛 수, 현재와 과거 검침 날짜 등에 대한 계량기
검침이 나오게 된다.

B. 체납 고지서: 납부일로부터 육십(60)일 이상 미납인 고지서가 있는
고객에게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1. 체납계정의 차단 통지서: 납부일까지 고지서 요금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체납 통지서("차단 통지서")를 차단 통지서에 나온
잠정적인 서비스 차단날짜로부터 최소한 약 칠(7)영업일 전에
수도서비스 고객에게 발송하게 된다. 서비스를 공급받는 주소와
고객의 주소가 아닌 경우, 차단 통지서는 공급받는 건물 주소의
"입주자"앞으로 발송할 것이다.

차단 통지서에 다음 내용이 나와야 한다:

- a) 고객의 이름과 주소
- b) 체납료
- c)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하여 요금을 납부하거나 납부약정을
해야하는 날짜
- d) 채무금액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 연장을 신청할 절차 설명
(하단 III 항 참고)
- e) 체납의 원인이 된 고지서의 재고와 항소를 신청하는 절차
설명 (하단 IV 항 참고)

시정부는 임박한 서비스 중단을 고객에게 전화로 대신 통보할 수
있다. 전화로 통보하는 경우, 시정부는 본 방침의 사본을 고객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하단 III 항에 규정된 별도납부약정 방법과

하단 IV 항에 규정된 고객의 고지서를 재고하고 항소하는 절차를 고객과 의논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2. 고객과 연락불통: 시정부가 고객에게 통지서나 (발송한 통지서가 배달불가능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 전화로 연락이 안되는 경우, 시정부는 미납으로 인한 임박한 서비스 중단과 본 방침의 사본을 주택에 방문하여 두고 오는 성실한 노력을 하거나,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두고 오는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이다.
3. 단수 마감일: 단수 통지서에 나온 날짜의 저녁 5 시까지 시청의 경리부에 수도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우편소인은 용납하지 않는다.
4. 부도수표의 통보 : 수도 요금이나 기타 수도 관련 요금의 납입금으로 부도 수표를 받게 되면, 시정부가 계정을 미납으로 처리한다. 납부마감일은 차단 통지서에 나온 날짜보다 빠르면 안되고, 만일 통지서에 나온 납부마감일까지 부도수표 금액과 부도수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도는 끊어진다. 만일 차단 통지서를 이전에 제공하지 않았다면, 부도 수표로 요금 납부한 고지서의 발급일로부터 육십(60)일이 지나고 나서 수도가 끊어진다. 부도수표 금액을 배상하고 부도수표 수수료를 납부하려면, 채무 잔액을 전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보증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5. 미납으로 끊어진 수도요금 납부금으로 결제한 부도 수표:
 - a) 미납으로 끊어진 계정의 서비스를 원상 복구하게 되었으나 납부금으로 결제하고 받은 ACH/수표가 유통 불가능으로 부도 처리된 경우, 시정부는 최소한 삼(3)역일 통지서나 차단 통지서 날짜가 지난 이후, 앞에서 언급한 수도를 끊을 수 있다.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보증자금의 형태로 미납요금을 납부해야만 고객의 계정이 원상 복구된다.

고객의 계정이 원상 복구되면, 고객가 유통 불가능 수표를 배서한 사실은 일년 동안 계정에 표시된다. 그러한 경우에, 일년 기간 동안 허용될 요금납부의 형태는 오직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보증자금이다.

C. 중단을 금지하는 상황: 다음 상황에 전부 부합되면 시정부는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한다.

1. 건강 상태- 수도서비스 중단이 (i)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ii)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고객이나 고객의 세입자는 주치의로부터 인증서를 받아 제출한다

2. 경제적 불능- 고객은 수도시스템의 정상적 청구주기에 수도요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고객의 가족원이 아래에 해당하면 “경제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진다. (i) 다음과 같은 정부보조의 현재 수혜자: 캘웍스, 캠프레시, 일반 보조금, 메디캘, 보조보장소득/주정부 추가 보조금 프로그램, 혹은 여성, 신생아,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 영양보조 프로그램 혹은 (ii) 고객은 연간 가구소득이 연방정부 빈곤 수치의 200% 이하라고 신고한 경우이다.

3. 별도납부약정 - 고객은 하단 III 항의 법규와 일치하는 별도납부약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D. 서비스 중단을 금지하는 상황의 판정 과정: 상기 (C)관에 서술된 정황을 증명할 책임은 고객에게 달려있다. 시정부가 고객의 도움 요청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처리하기 위하여, 계획된 서비스 중단일보다 가급적 훨씬 전에 고객은 (C)관 (1)에 의거하여 의료적 문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C)관(2)에 의거하여 경제적 불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C)관(3)에 의거하여 별도의 대안 납부약정을 맺을 의도를 표시해야 한다.

서류를 접수한 다음, 시정부의 경리부장이나 대리인이 서류를 재고하고 삼(3)역일 이내로 고객에게 별도의 납부약정 가능성에 관련된 정보 등 추가 정보를 요구하거나, 납부방법을 고객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답변한다.

상기 (C)관에서 규정한 정황을 충족하지 못한 고객은 (i) 고객은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시정부가 통보한 통지일로부터 이(2)영업일 혹은 (ii) 차단 통지서에 나온 서비스 중단이 임박한 날짜 중 더 늦은 날짜를 선택하여 시정부에게 빚진 연체료와 벌금과 기타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E. 저소득층 고객을 위한 특수 법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객은 가구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의 200% 이하라고 간주된다. (i) 고객의 가족원 중 누구든지 다음 정부 보조금의 현재 수혜자이다: 캘웍스, 캘프레시, 일반 보조금, 메디캘, 보조보장소득/ 주정부 추가 보조금 프로그램, 여성, 신생아,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 영양보조 프로그램, 혹은 (ii) 연간 가구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 수치의 200% 이하라고 신고한다. 고객이 이 중 한 가지 상황을 증명할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1. 재연결 수수료: 만일 서비스가 중단되서 다시 연결하게 될 경우, 시정부의 정상 근무시간에 일한 재연결 수수료는 50 달러를 초과하면 안된다. 만일 법정 한도보다 재연결의 실제 비용이 낮으면, 그러한 수수료는 재연결의 실제 비용을 초과하면 안된다. 서부지역 미 노동부 물가 지수의 변동에 따라 한도는 매년 조정된다.
2. 이자면제: 시정부는 연체 고지서에 이자를 부과하지 못한다.

F. 집주인-세입자 상황: 건물주나 관리인이 기록상 고객이며 수도요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계량기가 설치되고 분리된 단독주택, 다세대 거주용 건물, 모빌홈 파크에 아래 절차가 적용된다

1. 필수 통지서:

- a. 건물이 다세대 거주용 건물이면 수도공급을 중단하기 최소한 십(10)역일 전에, 혹은 건물이 분리된 단독주택이면 칠(7)역일 전에, 시정부는 계정이 체납된 거주용 입주자에게 수도공급을 중단하는 사실을 서면 통지서로 알리는 성실한 노력을 해야 한다.
- b. 세입자/입주자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청구 받는 고객이 될 수 있는 권리를 (하단 2 관 참고) 서면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2. 세입자/입주자가 고객이 되는 경우:

- a. 세입자/입주자가 서비스 약정에 동의하고 시정부의 요건과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한, 시정부는 세입자/입주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게 할 의무는 없다.
- b. 하지만, (i) 세입자/입주자 중 한 명이나 한 명 이상이 시정부가 만족할 만큼 계정의 추후 요금에 대한 책임을 인계하는 경우, 혹은 (ii) 시정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세입자/입주자의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중단할 물리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시정부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세입자/입주자만 서비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c. 과거특정기간 동안 서비스가 있었던 조건으로 시정부와 신용을 쌓는 경우, 시정부가 만족할 만큼 건물의 거주 증명과 과거 기간 동안 적시에 월세를 납부한 증명을 함으로써 균등요건을 충족한다.

- d. 주거용 수도요금이 세입자/입주자의 월세에 포함되어 수도요금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세입자/입주자가 시정부의 고객이 되면, 세입자/입주자가 이전 납부기간 동안 시정부에게 납부한 적절한 수도요금을 추후 월세에서 공제해도 된다.

III. 별도납부약정: 상기 II(D)항에 명시된 절차에 의하여 상기 II(C)항의 세가지 약관을 충족하는 고객은 시정부의 재량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별도의 납부 약정 중 한 가지나 한 가지 이상을 고객에게 제안해야 한다. 별도납부약정은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 A. 납부기간: 시정부의 경리부장이나 대리인이 내린 결정에 따라 고객은 미납잔액과 관리비를 십이(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납부해야 한다.
- B. 관리비: 승인된 분할납부 약정에서, 시정부가 때때로 결의안으로 정하는 액수이자 시정부의 약정 착수금과 행정비용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고객에게 청구한다.
- C. 일정: 고객과 상담하고 고객의 경제적 한계를 감안하여 시정부의 경리부장이나 대리인은 고객과 약정을 체결하고 별도납부일정을 마련한다. 별도납부일정은 시정부의 정해진 납부일과 겹치지 않는 한 정기적 일괄 납부를 허용해도 되며, 월 단위보다 더 자주 납부하거나 월 단위보다 덜 납부할 것을 허용하기도 하고, 상기 (1)관에 따라 모든 상황에서 납부 일정 체결일로부터 십이(12)개월 내에 미납잔액과 행정비용을 완납해야 한다. 동의한 일정은 문서로 작성하고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 D. 약정준수: 고객은 동의한 납부 일정을 준수해야 하며, 요금이 추후 정산주기마다 누적되므로 현상유지를 해야 한다. 이전에 동의한 일정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는 동안 고객이 추후 미납요금에 대해

납부일정의 연기신청을 할 수 없다. 고객이 동의한 일정의 약관을 육십(60)역일 이상 준수하지 않거나, 현재 서비스 요금을 육십(60)역일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시정부는 최후의 서비스중단 의도 통지서를 고객의 주거지에 게시하고 최소한 오(5)영업일이 지난 후 시정부는 고객의 건물에 수도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IV. 항소: 거주용 수도서비스에 관한 모든 고지서에 나온 금액의 항소 절차는 아래와 같다.

A. 최초항소: 고객이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고 십(10)일 내에 시정부가 발급한 고지서나 요금의 항소나 재고신청을 시작할 권리가 있다. 신청은 문서로 해야하며, 시정부의 경리부에 전달해야 한다. 고객의 항소와 이에 따른 조사가 대기 중이면, 시정부가 고객에게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한다.

B. 차단 통지서 항소: 상기 A 관에서 규정한 항소권에 추가적으로, 체납 통지서를 받은 고객이 고지서에 나온 물 사용량에 관해 고지서가 착오라고 주장할 경우, 체납 통지서의 날짜로부터 최소한 오(5)영업일 내에 체납 통지서와 관련된 고지서의 항소나 재고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상단 A 관에 의해 항소나 재고가 이미 제기된 고지서에 대해 항소권이나 재고권은 해당이 안 된다. B 관에 의한 항소나 재고신청은 서면으로 제기하며 항소나 재고의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문서를 포함해야 한다. 항소나 재고신청은 오(5)영업일 내에 시정부의 경리부에 전달해야 한다. 고객의 항소와 이에 따른 조사가 대기 중이면, 시정부가 고객에게 수도 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

C. 항소심: 상기 A 관이나 B 관에 의거하여 항소나 재고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경리부장이나 대리인("심리관")이 곧바로 심리일을 정한다. 심리관이 문제의 수도요금을 고객가 제시한 증거와

시정부의 기록상 정보와 대조 평가한 이후, 심리관은 고지서에 나온 수도요금의 정확성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항소한 고객에게 간결한 판결 요약서를 제공한다

1. 요금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할 경우, 시정부는 수정 고지서를 제공하고 수정된 요금은 수정일로부터 십(10)역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수정 고지서를 받은 후 육십(60)역일이 지나도 수정된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육십(60)역일이 만기된 이후 이튿날 영업일에 수도공급이 중단된다. 상기 II(B)(2)항에 의거하여 시정부는 고객에게 체납 통지서를 제공해야 한다. 수도요금, 벌금, 해당되는 재연결 비용은 전부 납부해야만 수도공급이 원상 복구된다.
2. (a) 질문의 수도요금이 정확하다고 판결하면, 위에서 정의한 납부일이나 심리관의 판결일로부터 이(2)영업일 중에서 더 늦은 날짜까지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심리관이 판결을 내리는 당시, 고객에게 추가 항소권을 시의회에서 알려준다. 항소는 서면으로 제기하고 항소나 재고가 상기 A 관에 의한 최초 항소인 경우, 심리관의 판결이 나온 후 칠(7)역일, 혹은 항소나 재고가 상기 B 관에 의한 차단 통지서에 대한 항소인 경우는 삼(3)역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 고객과 시정부가 서로 후일을 정하지 않는 한, 항소심은 시의회의 다음 번 정기회의에서 열리게 된다

(b) 상기 A 관에 의한 최초 항소는 만일 고객이 시의회에 항소를 적시에 제기하지 않을 경우, 문제의 수도요금을 즉시 납부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본래 청구일로부터 육십(60)역일까지 요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상기 II(B)(1)항에 의거하여 차단 통지서를 제공하고, 고객의 건물에 잠재적 서비스 중단을 진행할 수 있다

(c) 상기 B 관에 의한 차단통지서는 만일 고객가 시의회에 항소를 적시에 제기하지 않을 경우, (i) 차단통지서에 나온 원래 육십(60)역일 만기 통지기한이나 혹은 (ii) 항소기한 만기일 중 더 늦은 날짜를 선택하여 최소한 이십사(24) 시간 내에 고객에게 문서나 전화로 통보하고 나면, 해당 건물의 수도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다.

3. 시의회에 심리를 신청하면, 문서로 신청해야 하며 시정부 경리부에 전달해야 한다. 고객는 시의회에 직접 출두해야 하고, 질문의 고지서에 나온 수도요금이 부정확하다는 증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시의회는 문제의 수도요금을 고객이 제시한 증거와 시정부의 기록상 정보와 대조 평가하여, 앞에서 말한 요금의 정확성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 a) 시의회가 문제의 수도요금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하게 되면, 고객는 수정된 요금을 받게 된다. 수정된 고지서를 받고 육십(60)역일이 지나도 수정된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육십(60)역일 기간이 만기된 그 이튿날 영업일에 수도가 끊어진다. 상기 II(B)(2)항에 의하여 시정부는 고객에게 차단 통지서를 제공해야 한다. 미납 수도요금과 해당되는 재연결 비용은 전부 완납해야만 수도가 원상 복구된다
- b) 질문의 수도요금을 정확하다고 판정하면, 시의회가 판결을 내린 후 이(2)영업일 내에 수도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 c) 초과요금은 고객의 다음 정기고지서에서 크레딧으로 나타나게 된다.

d) 시정부 혹은 시의회에 제기한 고객의 항소가 대기 중이면 고객의 수도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

e) 시의회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

V. 서비스의 원상복구: 시정부가 미납으로 중단한 서비스를 재개하거나 계속 공급받으려면, 상기 II(E)(1)항에 나온 제한사항에 따라 고객은 시정부가 정한 보증금과 재연결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시정부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가능한 곧바로 재연결을 시도해야 한다. 시정부는 고객의 신청을 받고 재연결 해당비용을 납부하고 이튿날 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 재연결을 해야 한다.

VI. 기타 언어 통지문: SB998 에 의거하여 본 방침과 통지문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 베트남어, 한국어, 시정부 서비스 지역의 고객 중 십(10)퍼센트 이상이 사용하는 기타 언어로 볼 수 있어야 한다.